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5호 중 “교육”을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그 밖의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가 교육회의”를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정정책관으로”를 “학교교육지원관으로”로, “교육 과정정책관은”을 “학교교육지원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4 호까지, 제47호 및 제48호”를 “제4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정정책관”을 “학교교육지원관”으로, “제41호까지, 제45호 및 제4 6호”를 “제4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학교정책과·교원정책 과·교원양성연수과·교육과정정책과·고교교육혁신과·교과서정책과 ·교수학습평가과 및 민주시민교육과”를 “학교정책과·교원정책과·교 원양성연수과·고교교육혁신과·교과서정책과·교수학습평가과 및 인 성체육예술교육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지방교육자치 강화 및 협력

15의3.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제7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0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제18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9.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20. 교과별 교육과정해설서, 성취수준 및 평가기준 개발 등 지원

21. 교육과정 연수 및 홍보, 대학입시정책 연계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22.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운영

23. 교육과정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24. 영어교육 강화 및 영어교사 전문성 제고 정책의 수립·시행

25.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6. 한국교육방송 영어전용방송(EBS-e) 운영 지원

27.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영어 공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28.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9. 자유학기제 지원체제 구축·운영 및 확대·발전 지원

30. 초·중등학교 과학·수학·정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1.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추진

32.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인프라 구 축·운영, 체험·탐구·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 육 활성화 총괄

제7조제13항제19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주시민교육과장”을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2. 학교 체육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체육 수업 내실화 지원
- 23. 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24.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스포츠강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25.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 26. 체육계열 교육과정 운영 학교 지원
- 27.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 28. 학교 예술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9. 문화 소외 학생의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30. 예술계열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31.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지원계획 수립
- 32. 예술교육공간 조성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제8조제6항제11호 중 “교육과정·교수학습 운영”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으로 한다.

제9조제6항제11호 중 “정책”을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7호 중 “성취기준”을 “성취수준 운영 지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통계과”를 “교육데이터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통계과장”을 “교육데이터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제21조제2항 중 “민주시민교육과장”을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48”을 “633”으로 하고, 특정직 계 “95”를 “85”로 하며, 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를 “1”로 하고, 교육연구관 “20”을 “18”로 하며, 교육연구사 “60”을 “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546”을 “541”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7”을 “4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7”을 “4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3”을 “4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54”를 “639”로 하고, 특정직 계 “95”를 “85”로 하며, 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를 “1”로 하고, 교육연구관 “20”을 “18”로 하며, 교육연구사 “60”을 “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552”를 “547”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7”을 “4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

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192”를 “189”로 하며,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6”을 “45”로 한다.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를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54”를 “53”으로 하고, 특정직 계 “33”을 “32”로 하며, 교육연구사 “21”을 “2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부칙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과 관련된 일부 사무와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사무를 국가교육위원회가 승계함에 따라 이영 시행 당시 교육부 공무원 15명(장학·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7명, 7급 1명)과 교육부 소속기관 공무원 1명(교육연구사 1명)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

일까지는 별표1의3 및 별표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6,561”을 “26,556”로, 일반직 계 “6,218”을 “6,213”로, 전산주사 “103”을 “102”로, 전산주사보 “101”을 “99”로, 전산서기보 “29”를 “27”로 하며, 별표 1의2 중 총계 “26,561”을 “26,556”로, 일반직 계 “6,218”을 “6,213”로, 전산주사 “108”을 “107”로, 전산주사보 “96”을 “94”로, 전산서기보 “29”를 “27”로 하며, 별표 3 중 전남대학교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남대학교	1,577	419	1,996
-------	-------	-----	-------

[별표 1의3]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

(제18조제1항 본문 및 교육부령 제000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총계	641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2
특정직 계	93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2
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1
교육연구관	20
교육연구사	59
일반직 계	541
고위공무원단	1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장학관	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	2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	
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	

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6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	
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	
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	
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189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	
주사·임업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	
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	
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33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	
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	
보 또는 전산주사보	42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사서서기·공업서기·보건서기·식품	
위생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	21
기	
행정서기보·사서서기보·공업서기보·보건서기	
보·식품위생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	
보 또는 전산서기보	22
운전서기보	4
기록연구관	1
사무운영서기보	11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사진촬영 담당)	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

(제18조제1항 단서 및 교육부령 제000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총계	647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2
특정직 계	93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2
장학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1
교육연구관	20
교육연구사	59
일반직 계	547
고위공무원단	1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장학관	5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1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	2
임기제 서기관(비상안전담당관)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 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 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6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 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189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기상주사 · 보건주사 · 식품위생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 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36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 사보	45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 사서서기 · 공업서기 · 보건서기 · 식품위생 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	21
행정서기보 · 사서서기보 · 공업서기보 · 보건서기보 · 식품위생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전산서 기보	22
운전서기보	4
기록연구관	1
사무운영서기보	11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사진촬영 담당)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획조정실장) ① ~ ⑥ (생략)	제3조(기획조정실장)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 다.	⑦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 획의 수립</u>	5. <u>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 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 립 및 그 밖의 교육</u> -----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9. <u>국가교육회의</u> 와의 업무 협력	9. <u>국가교육위원회</u> -----
10. ~ 13. (생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⑧ ~ ⑩ (생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7조(학교혁신지원실) ① (생 략)	제7조(학교혁신지원실) ① (현행 과 같음)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교 혁신지원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 관은 학교혁신정책관 및 <u>교육과 정정책관으로</u> 하며, 학교혁신정 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② ----- ----- ----- <u>학교교육지원관으로</u> -- ----- ----- ----- ----- ----- 학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
로 하고, 교육과정정책관은 장
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
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다.

③ 학교혁신정책관은 「교육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 제
42호부터 제44호까지, 제47호
및 제48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
교혁신지원실장을 보좌한다.

④ 교육과정정책관은 「교육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3항제26호부터 제41호까지,
제45호 및 제46호의 사항에 관
하여 학교혁신지원실장을 보좌
한다.

⑤ 학교혁신지원실에 학교정책
과·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
과·교육과정정책과·고교교육
혁신과·교과서정책과·교수학
습평가과 및 민주시민교육과를
둔다.

교교육지원관은 -----

-.

③ -----

----- 제48
호까지-----

-----.

④ 학교교육지원관-----

----- 제41호까지-----

-----.

⑤ ----- 학교정책과
·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과
·고교교육혁신과·교과서정책
과·교수학습평가과 및 인성체
육예술포육과-----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지원	
⑦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7. 교육과정 연수 및 홍보, 대	<삭 제>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학입시정책 연계 등 교육과정	
<신 설>	15의2. 지방교육자치 강화 및	후속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신 설>	협력	8.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	<삭 제>
	15의3.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	정, 국가 정체성 교육 등 국가	
	령 및 제도 개선	사회적 요구사항 및 경제소양	
16. ~ 24. (생 략)	16. ~ 24. (현행과 같음)	등 법교과 학습주제의 교육과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정 반영	
⑩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	⑩	9.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운	<삭 제>
항을 분장한다.		영	
1.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	<삭 제>	10. 교육과정 정보서비스에 관	<삭 제>
학교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수		한 사항	
립·시행		11. 영어교육 강화 및 영어교사	<삭 제>
2. 교과별 교육과정 기본정책의	<삭 제>	전문성 제고 정책의 수립·시	
수립·시행		행	
3.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	<삭 제>	12.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원어민	<삭 제>
립·시행		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정책	
4.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검	<삭 제>	의 수립·시행	
토 및 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13. 한국교육방송 영어전용방	<삭 제>
개발 연구		송(EBS) 운영 지원	
5. 교육과정심의회 설치·운	<삭 제>	14.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영	<삭 제>
영 및 포럼 운영		어 공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6. 교과별 교육과정해설서, 성	<삭 제>	지원	
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등		15.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운영	<삭 제>
		에 관한 사항	

16. 자유학기제 지원체제 구축 · 운영 및 확대·발전 지원	<삭 제>				학입시정책 연계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17. 초·중등학교 과학·수학 · 정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시행	<삭 제>		<신 설>		22.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운영
18. 과학·수학·정보교육 진 흥에 관한 사업 추진	<삭 제>		<신 설>		23. 교육과정 정보서비스에 관 한 사항
19.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 한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인 프라 구축·운영, 체험·탐구 · 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총괄	<삭 제>		<신 설>		24. 영어교육 강화 및 영어교사 전문성 제고 정책의 수립·시 행
⑪ 고교교육혁신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⑪ ----- -----.		<신 설>		25.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원어 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정책 의 수립·시행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26. 한국교육방송 영어전용방 송(EBS-e) 운영 지원
<신 설>	18.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 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신 설>		27.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영 어 공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신 설>	19.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 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시 행		<신 설>		28.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운영 에 관한 사항
<신 설>	20. 교과별 교육과정해설서, 성 취수준 및 평가기준 개발 등 지원		<신 설>		29. 자유학기제 지원체제 구축 · 운영 및 확대·발전 지원
<신 설>	21. 교육과정 연수 및 홍보, 대		<신 설>		30. 초·중등학교 과학·수학 · 정보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시행
					31. 과학·수학·정보교육 진 흥에 관한 사업 추진

<u><신 설></u> ⑫ (생 략) ⑬ 교수학습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 략) 19. 학교 체육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체육 수업 내실화 지원 20. 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1.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스포츠강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2.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23. 체육계열 교육과정 운영 학교 지원 24.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25. 학교 예술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2. 융합인재교육(STEAM)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운영, 체험·탐구·활용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융합인재교육 활성화 총괄 ⑫ (현행과 같음) ⑬ ----- -----. 1. ~ 18.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6. 문화 소외 학생의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7. 예술계열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8.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지원 계획 수립 29. 예술교육공간 조성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 략) 14의2. ~ 21. 삭 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⑭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 1. ~ 14. (현행과 같음) 22. 학교 체육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체육 수업 내실화 지원 23. 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4.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스포츠강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5.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26. 체육계열 교육과정 운영 학교 지원 27.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	--	--	---	---

<신 설>	28. 학교 예술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 정책 및 교과용도서의 개발 · 운영	위한 후속 지원 -----
<신 설>	29. 문화 소외 학생의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 23. (생 략)	12.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30. 예술계열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진로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신 설>	31.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지원 계획 수립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32. 예술교육공간 조성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7.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	7. ----- 성취수준 운영 지원----- -
제8조(교육복지정책국) ① ~ ⑤ (생 략)	제8조(교육복지정책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8. ~ 19. (생 략)	8. ~ 19. (현행과 같음)
⑥ 유아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10조(교육안전정보국) ① (생 략)	제10조(교육안전정보국) ① (현행과 같음)
11. 유치원 <u>교육과정·교수학습 운영</u> 지원	11. ---- <u>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u> --	② 교육안전정보국에 학교안전총괄과·교육시설과·교육정보화과 및 <u>교육통계과</u> 를 둔다.	② ----- ----- <u>교육데이터과</u> -----.
12. ~ 21. (생 략)	12. ~ 21.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⑦ <u>교육통계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u>교육데이터과장</u> ----- -----.
제9조(평생직업교육국) ① ~ ⑤ (생 략)	제9조(평생직업교육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⑥ 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제13조(국립특수교육원) ① ~ ③ (생 략)	제13조(국립특수교육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1.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	11. ----- 운영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개발</u> .	6. <u>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u>

<u>수시 개정, 운영 및 적용 지원</u>	<u>위한 후속 지원</u>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2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u>민주시민교육과장</u> , 학생건강정책과장, 진로교육정책과장 및 교육정보화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 <u>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u> ----- ----- -----.

신·구정원대비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648</u>	<u>633</u>	-15
·	·	·	
·	·	·	
특정직 계	<u>95</u>	<u>85</u>	-10
·	·	·	
장학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u>	<u>1</u>	-1
·	·	·	
교육연구관	<u>20</u>	<u>18</u>	-2
교육연구사	<u>60</u>	<u>53</u>	-7
일반직 계	<u>546</u>	<u>541</u>	-5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	<u>47</u>	<u>46</u>	-1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 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 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 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u>192</u>	<u>189</u>	-3
.	.	.	
.	.	.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식품위생 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 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43</u>	<u>42</u>	-1
.	.	.	
.	.	.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54</u>	<u>639</u>	-15
특정직 계	<u>95</u>	<u>85</u>	-10
장학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u>	<u>1</u>	-1
교육연구관	<u>20</u>	<u>18</u>	-2
교육연구사	<u>60</u>	<u>53</u>	-7
일반직 계	<u>552</u>	<u>547</u>	-5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 통계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 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 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u>47</u>	<u>46</u>	-1

전산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 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 관 · 임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 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u>192</u>	<u>189</u>	-3	
·	·	·		
·	·	·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식품위생 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 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46</u>	<u>45</u>	-1	
·	·	·		
·	·	·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립특수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54</u>	<u>53</u>	-1
특정직 계	<u>33</u>	<u>32</u>	-1
·	·	·	
·	·	·	
교육연구사	<u>21</u>	<u>20</u>	-1
·	·	·	
·	·	·	